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가합501737 판결

[채권양수금]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3 4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4가합501737 채권양수금

원고 중소기업은행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6. 17.

판결선고 2014. 7.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703,022원 및 그 중 193,940,535원에 대하여 2014. 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업무협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물품 또는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협력기업이 원고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른 생산 및 구매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가 위 공급계약에 따른 협력기업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받고 협력기업에게 대출을 해 주되, 피고가 협력기업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대출금의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협력기업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A의 대표 B은 피고의 협력기업으로서 2010. 3.경부터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및 채권양도 등

1) B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0. 3. 24.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플러스네트웍론(이하, 아래 거래조건변경약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여신거래약정]

여신금액 : 2억 원

여신만료일 : 2011. 3. 24.

[거래추가약정(대기업 연계 협력기업대출용)]

제5조 대출금 및 카드이용대금상환

① 대출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되, 만기일 이전에 협약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또는 본인이 외상매출채권을 할인받는 경우 계약정보별로 은행은 본인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동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기로 한다.

[플러스전자어음결제 이용약정]

제1조 용어의 정의

2. 플러스전자어음

플러스전자어음이란 주계약업체가 발생(등록)하는 물품 등의 결제수단으로서 "주계약업체", "결제할 금액", "물품 등의 내역", "세금계산서발행일", "지급기일" 등의 전산데이터 형식으로 구성되고, 본인이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조건으로 플러스전자어음대출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입니다.

제3조 플러스전자어음 결제대금의 처리

① 플러스전자어음 지급기일에 주계약업체가 플러스전자어음을 결제한 경우 동 결제대금은 본인이 은행에 신고한 입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위 1항에 불구하고 상환해야 할 본인의 플러스전자어음대출이나 네트워크론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동 결제대금으로 직접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합니다.

[거래추가약정]

제4조 대출의 신청 및 실행

① 은행과 플러스네트워크론 공동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구매기업이 본인에 대한 발주정보를 은행에 통보한 경우 본인은 동 발주정보에 의거 대출신청을 하고, 은행은 발주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적정금액을 실행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7조 대출원리금 자동상환

① 대출원금은 대출만료일에 일시 상환하되, 물품 등의 납품대금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수령하거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의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본인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동 결제대금 등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받기로 합니다.

2) B은 2010. 3. 24.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와 사이에, B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2010. 3. 24.부터 2011. 3. 24.까지 사이에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그 후 B은 이 사건 대출약정 이후 2013. 3. 25.까지 매년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하면서, B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2011. 3. 24.부터 2012. 3. 24.까지, 2012. 3. 27.부터 2013. 3. 24.까지, 2013. 3. 25.부터 2014. 3. 25.까지 각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을 매년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각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2014. 1. 8.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잔여 대출원리금은 208,703,022원{= (2012. 9. 28.자 대출 원금 124,370,535원 + 이자 9,445,3435원) + (2012. 12. 24.자 대출 원금 74,887,142원 + 이자 5,317,142원)}이다.

라. B의 회생절차

한편 B은 창원지방법원 2013회단2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7. 2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결정으로 개시된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B로부터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출원리금 상당의 매출채권액을 양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양도담보에 해당하고,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상 원고는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을 행사하거나 변제받을 수 있을 뿐 개별적으로 피고에게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채권양도의 성격

채권의 양도담보는 양도성이 있는 현재의 채권이든 장래의 채권이든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그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협력기업에 대한 발주정보를 원고에게 통보한 경우, 협력기업은 동 발주정보에 의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원고는 발주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적정금액을 대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대출약정에 원고가 B에게 대출함에 있어 B이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대출이 실행된 점, ③ 원고가 B로부터 매출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실제 매출채권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B에 대한 대출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로부터 매출채권을 지급받으면 그 금원으로 대출채권에 우선 충당하는 구조인 점, ④ 업무협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출채권액을 대출채권의 변제에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기업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점, ⑤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B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⑥ 또한 원고는 B와 사이에 작성하여 피고에게 발송하는 채권양도통지서에 '대출채권 담보취득용'이라는 부동문자를 인쇄해 두고 있고, 이 사건 대출약정 추가약정서 일부 조항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임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의 B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이미 발생한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도 일괄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소위 집합채권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의 추심권한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있고 B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집합채권양도담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집합채권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로서 반드시 채권의 추심권한을 채무자에게 유보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 제1항에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은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원고의 B에 대한 대출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B에 대한 회생담보권자

에 해당한다.

한편 법 제5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할 것인데, 법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위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등 참조), 법 제58조 제1항 제2호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58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위 법리는 위 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담보권자인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회생담보권자인 원고가 매출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매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B의 재산인 매출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와 마찬가지로 회생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제기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유진 하승우